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4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한국투자증권㈜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과태료 550백만원 부과

○ **(수정심의)** 과태료 385백만원 부과

* '12.1월 인수업조서 작성의무 도입 후 조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이 부재했던 점, 금번 지적이 최초 제재사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감경

3. 조치이유

가. 인수업무조서 작성의무 위반

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,

○ 한국투자증권㈜는 20xx.xx.xx. ~ 20xx.xx.xx. 중 총 xx건의 기업공개에 대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) 제71조 제7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4호 마목, 舊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9조 제6호